



작 성 요 령

1. 이 명세서는 재무구조개선(자구)계획을 이행한 연도의 2차연도분부터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.
2. ⑥부채비율란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3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기재합니다.
3. ⑦기준부채비율란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3제1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기재합니다.
4. ⑫자구계획미이행금액란은 ⑩미사용액의 연차별 사용내역을 별지로 작성합니다.